

해외정보리포터 질의응답집

2021. 2.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본 질의응답집(Q &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해외정보리포터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질의응답집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해외정보리포터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응답집 내용은 2020년 5월 29일 개정된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지침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질의응답집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777(신명인주무관), 1755(김린아실무관)

Q. 해외정보리포터 위촉방법 및 기간, 재위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위촉방법)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1차 심사 진행 후,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여부 진행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

(재위촉 및 해촉)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활동 평가결과 및 해외정보리포터의 재위촉 희망 여부 등을 확인 후 재위촉 및 해촉을 진행함

Q. 해외 현지 식·의약품 등 정보수집 범위는?

A.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에 따라 수집하면 됨

-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 식·의약품 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 식·의약품 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 위해 식·의약품 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 등 안전관련 정보

Q. 정보수집 시 제외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 확인

-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거나 한국에서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예시 : A국가 B지역 C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역적인 정보
- 단순 인터넷 루머 등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
(예시 : '녹차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등)
-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Q. 수집하여 제출한 보고서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 제외되는 것인가?

A. 해외정보리포터가 수집하여 제출한 보고서는 식약처 위해정보과 분야별 정보분석 담당자가 검토 후 제외 여부를 결정함

- 제외되는 경우는 분석 결과 정보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정보 제출시기가 정보발생일과 3일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식약처 소관이 아닌 정보 등임

Q. 정보수집 및 제출방법은?

A. 해당 거주 국가 내 식의약 규제기관 및 언론사 등에서 발표하는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검색·번역하여 '위해정보보고시스템'에 로그인 후,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 및 등록 후 제출하면 됨

Q. 위해정보보고시스템에 로그인했으나, 계정상태가 휴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정상태가 휴면인 경우는 6개월 동안 해당 시스템을 전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함. 본인의 계정이 휴면상태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계정이 휴면인 해외정보리포터는 해당 시스템상에서 휴면해제 신청을 하면 식약처 위해정보과 담당자가 확인 후 휴면해제 처리하고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함

Q. 코로나19 및 개인사정 등으로 당초 해외 거주가 아닌 국가나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 정보수집 활동이 가능한지?

A.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 거주 교민, 학생,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해외정보리포터가 거주하는 국가의 식의약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위촉 거주 국가가 아닌 경우 해외정보리포터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 하며
- 다른 국가로 이동 및 국내 귀국하여 인터넷으로 이전 거주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운영취지와 맞지 않음
- (재활동 가능 시기) 당초 위촉 시 거주하던 국가로 재입국하는 시점부터 정보수집활동이 가능함

Q. 해외정보리포터 해촉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가?

A.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활동 평가 등)에 따라 리포터 개인별 보고서 제출실적 및 교육이수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한 경우 해촉 대상이 되며,

- 거주국가 이동, 한국으로 귀국, 업무로 인한 시간 할애 불가 등 개인사정으로 자진해촉을 요청한 경우도 해촉이 가능함

Q. 해외정보리포터가 수집 및 제출한 정보보고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A. (수시보고서) 제출된 보고서에 기재된 식의약 위해정보를 식약처 위해정보과 정보분석 담당자가 확인 후,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력 및 판매여부 등 검토 후 회수·판매중단, 판매사이트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 조치에 활용됨

(심층보고서) 식약처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Q. 해외정보리포터가 수집 및 제출한 정보보고서 중 '20년에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는?

A. (수시보고서) 한국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식약처 위해정보과 에디터가 미처 수집하지 못한 '중국의 식의약

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해외정보리포터가 수집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정보 내용은 같지만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약처 위해정보과 에디터보다 더 빨리 정보를 수집해 제출한 사례도 있었음

- '20년에 총 1,453건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84건의 정보를 조치필요 또는 식의약 정책 참고자료로 관련부서에 제공하였으며, 24건의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외 부적합 정보, 직구 주의 정보 등으로 게시하였음

(심층보고서) 코로나19 관련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 정책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만 마스크 실명제 및 수급동향'을 긴급요청하여 신속하게 제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 '20년에 13개 주제로 총 181건의 심층보고서가 제출되어 식약처 관련부서에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Q. 해외정보리포터 보고서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은?

A.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서에 대한 등급 평가(5등급) 결정 후, 수당작업을 진행함

(국내계좌 소유자인 경우) 식약처 위해정보과에서 수당작업 후 지출부서에 요청(대략 5일 소요)

(해외계좌 소유자인 경우) 식약처 위해정보과에서 수당작업 → 지출부서에서 1차 작업 → 지출부서에서 거래은행으로 이체요청('달리' 단위만 송금 가능하며, 대략 2~3주 소요 / 제출된 해외계좌번호가 다른 경우 약 1주 정도 추가 소요)

* 해외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신청서의 정확한 작성이 요구됨

Q. 해외정보리포터 보고서에 대한 수당 지급금액은?

A. 해외정보리포터 제출보고서에 대한 등급 평가 후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8(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함

(단위: 원)

보고서 평가등급	최초보고서(추가보고서)	심층보고서
매우우수	100,000(50,000)	200,000
우수	80,000(40,000)	160,000
보통	60,000(30,000)	120,000
미흡	40,000(20,000)	80,000
매우미흡	미지급	미지급

※ 최초보고 수당은 분기 최대 15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부족 등 필요한 경우 수당지급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안의 금액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Q. '20년 11월경에 예산 부족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정보수집을 중단했는데 지금도 보고서를 제출해도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A. '20년에는 보고서 건수 급증으로 예산이 부족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보고서 제출 중단을 요청드린 것

임. 지금은 정상 지급 가능하며, '21년 1분기에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한 수당은 4월에 평가를 통해 일괄 지급 예정임. 만약 올해 연말에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미리 안내드리겠음

Q. 해외정보리포터 신규 선발계획은?

A. '20년 해외정보리포터 활동평가 결과 일부 실적이 미흡한 분들과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요청한 분들이 있어 해촉 하였으며, 국가별 중요도 등을 감안해 '21년 신규 위촉을 진행할 예정임

Q. 해외정보리포터 교육 방법 및 계획은?

A. 교육 계획이 나오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방법) 온나라 PC영상회의(화상)를 통해 교육 예정

(교육시기) 해외정보리포터 신규 위촉자는 선발 이후('21.4월 예정), 기존 위촉자('21.5월 예정)

Q. 정보 수집기한이 발생일 기준 회수정보 3일 이내, 정책정보 4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거주국 기준인지, 아니면 한국시간 기준인지? 한국시간 기준이라면 발생일도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 현재 여러 국가에서 해외정보리포터가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 보고서의 정보 발생일은 출처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제출일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함.

위해정보과에서 자체 수집하는 정보는 정보발생일 기준으로 당일, 익일 수집하고 있으나, 해외정보리포터의 경우 거주국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회수정보는 3일, 정책정보는 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